



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

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3. 8. 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 영 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9년 2월 26일
- 회부일자: 2019년 2월 27일

3. 제정 이유

-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충북의 경우,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10.7%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되었음. 이는 2015년 대비 증가율(4.6%) 전국 최고 수준으로 그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.
- 이에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각종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 예방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다.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- 라. 학생 도박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마.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(안 제7조)

바. 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(안 제8조)

사. 도박 예방·근절문화 조성(안 제9조)

아. 예산지원(안 제10조)

자.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최근 컴퓨터, 인터넷, 핸드폰 등 스마트미디어의 학생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 도박 등 도박환경에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.
-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18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충북의 2018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2015년 대비 4.6% 증가한 10.7%(위험군 5.5%, 문제군 4.1%), 8,37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. 도박문제 최고수준인 문제군도 4.1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,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도 2015년 보다 16% 증가한 57.8%,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, 경주 류 등 법적으로 이용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을 이용한 청소년도 약 3배(1.1%→3.0%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충북의 청소년 도박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.
-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 도내 학생들에게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에 대한 예방교육과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3조에 도박의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여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·운영하도록 하고, 안 제4조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한 것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

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사료되며,

- 안 제5조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도록 한 것은 도박 예방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7조에 매년 1회 이상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박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도박예방교육의 실제적 시행과 도박문제 위기학생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됨.
- 도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을 담은 제9조는 도박 예방과 근절 노력을 일시적인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「법령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어,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